

## 12 농지전용허가

- 개요 :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
- 법적근거 : 농지법 제34조제1항
-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

구분	법정 사항	사전심사청구
처리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10일) 농업진흥지역 안 3천㎡미만, 농업진흥지역 밖 3만㎡미만</li> <li>- (20일) 농업진흥지역 안 3천㎡이상~3만㎡미만, 농업진흥지역 밖 3만㎡이상~20만㎡미만</li> <li>- (30일) 농업진흥지역 안 3만㎡이상, 농업진흥지역 밖 20만㎡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10일) 농업진흥지역 안 3천㎡미만, 농업진흥지역 밖 3만㎡미만</li> <li>- (14일) 농업진흥지역 안 3천㎡이상~3만㎡미만, 농업진흥지역 밖 3만㎡이상~20만㎡미만</li> <li>- (21일) 농업진흥지역 안 3만㎡이상, 농업진흥지역 밖 20만㎡이상</li> </ul>
구비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1) 농지전용허가 신청서</li> <li>(2) 사업계획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용목적, 사업시행자, 시행기간, 시설물 배치도,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, 시설물 관리·운영 계획, 계획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 (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)</li> </ul> </li> <li>(3)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농지 전용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</li> <li>(4) 지적도 등본 및 지형도(1/5,000이상 도면 사용 전용예정구역 표시)</li> <li>(5) 피해방지계획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시설 설치 등 피해종류별 필요한 피해방지대책</li> </ul> </li> <li>(6)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1) <del>농지전용허가 신청서</del></li> <li>(2) 사업계획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용목적, 사업시행자, 시행기간, 시설물 배치도,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, 시설물 관리·운영 계획, 계획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 (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)</li> </ul> </li> <li>(3) <del>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농지 전용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</de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del>사용승낙서 또는 매매계약서(지상권 설정 시 지상권동의서)</del></li> </ul> </li> <li>(4) 지적도 등본 및 지형도(1/5,000이상 도면 사용 전용예정구역 표시)</li> <li>(5) 피해방지계획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시설 설치 등 피해종류별 필요한 피해방지대책</li> </ul> </li> <li>(6) <del>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</del></li> </ul>